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5-39
----------	-------

제출년월일 : 95. 9.

제 출 자 : 달서구청장
(기획감사실)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보상

금 지급기준의 일부 변경에 따른 조치로써

-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원의 회기중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로 인한 보상금의 적절한 지급과 보상심의회 의 원활한 운영을 위함.

2.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제32조의 2)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5조의 2)

3. 주요골자

- 보상금 지급기준 적용시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자구 변경
- 보상금 지급시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하여 중복될 경우 지급요령 명시

4. 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일비”라 함은」을 「“회의수당”이라 함은」으로, 「“일비”를」을 「“회의수당”을」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하고, 제3호중 “제2호의 보상금지급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치료비 전액”을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일비"라 함은 영15조 규정에 의한 일비를 말한다.	제2조(정의) 1. (현행과 같음) 2. " <u>회의수당</u> "이라 함은..... ... <u>회의수당</u>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회의원 당해년도 <u>일비</u> 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회의원 당해년도 <u>일비</u> 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u>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치료비 전액</u>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1. <u>회의수당</u> 2. <u>회의수당</u> 3. <u>치료비 전액</u> .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u>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u>

현행	개정 (안)
<p>②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p>	<p>②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p>